

1. 개정이유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등을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 및 지급 신청과 지급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 절차 개선(안 제4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나. 보상금의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 “보상금을”을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보상금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7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해양수산부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① ----- ----- ----- ----- ----- ----- -----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u>해양수산부장관</u> -----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u>보상금</u> 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 ----- ----- -----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보상금을 -----.